

시즌4

제7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이감

[2021학년도 시즌4 제7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9] 과학 :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명 공학 - 체온 조절 시스템

정온 동물, 심부 온도, 대사, 체온 조절 시스템, 산열, 방열, 방열 시스템, 동맥혈, 정맥혈, 온열성 정보, 온도 수용기, 간뇌, 시상 하부, 온도 조절 중추, 혈관 확장 역치 온도, 혈관 확장 뉴런, 신경 종말,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수용체, 비증발성 방열 작용, 발한 역치 온도, 발한 뉴런, 콜린 신경 종말, 아세틸콜린, 무스카린 수용체, 증발성 방열 작용

* 지문 분석

문단1 :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

1)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온 동물**의 경우 체내 기관의 온도인 **심부 온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대사**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다.

⇒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든 해서 무조건 열을 떨어뜨려야 한다. 체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생명에 위협이 된다. 그런데 ‘심부 온도’라는 개념이 좀 낯설다. 보통 체온계로 피부 온도를 재지 않던가. ‘심부 온도’가 체내 기관의 온도라는 점은 짚어 두고 넘어가자.

2) 그래서 인체는 심부 온도를 $37 \pm 0.2^{\circ}\text{C}$ 정도로 유지시키는 **‘체온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중심 화제다. ‘체온 조절 시스템’의 핵심은 1)에서 말한 심부 온도를 일정 범위 안으로 유지하는 거란다.

3) 예컨대 체내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항상 생명 유지 작용으로 인해 **산열**이 발생하고 이 열은 피부를 통해 방출되는데, ……

⇒ 신체에는 섭취된 음식의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꿔 생명을 유지하는 대사 작용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산열’은 피부를 통해 방출되는데……

4) …… 외부 온도가 높아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상황에서는 산열이 피부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방출되도록 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맞다. 겨울과 달리 무더운 여름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이 달아오르거나 땀이 저절로 나지 않던가. 이렇듯 심부 온도가 높아지면 피부를 통해 산열이 방출된다는 말이다.

5) 그런데 **운동 시**에는 근육 조직에서 다량의 산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는 일인 **방열**의 양을 더 늘리기 위해, 운동 시에는 평상시와는 다른 **방열 시스템**이 작동된다.

⇒ 운동 시는 평상시와 다른 상황인 거다. 평상시 산열은 기본적인 방출 작용으로도 충분히 방출되지만, 운동할 때는 근육 조직에서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출 작용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운동 시에는 평상시와 다른 ‘방열 시스템’이 작동할 필요가 있겠다.

문단2 : 평상시의 체온 조절 시스템

1) 산열이 방출되는 기본 작용은 혈액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심부 온도로 데워진 **동맥혈**이 피부 혈관으로 흘러가 열을 잃은 후 찬 **정맥혈**이 되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맥락 짚기] 운동 시의 방열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평상시의 체온 조절 시스템부터 설명하고 있다.

⇒ 산열이 방출되는 핵심은 혈액 순환이다. 체내 기관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심부 온도를 올리고, 심부 온도의 ‘열’은 동맥혈이 혈관을 빙 돌면서 열을 방출하고 찬 정맥혈이 되어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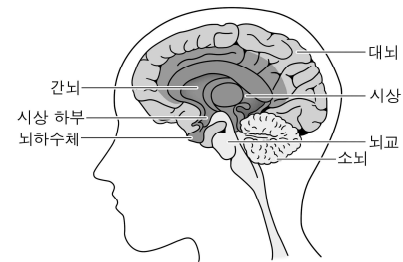
2) 평상시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피부 온도와 같은 **온열성 정보**에만 의존하여 작동한다.

⇒ 평상시에는 온열성 정보에 ‘만’ 의존하여 작동한다니, 평상시가 아닌 운동 시에는 온열성 정보뿐만 아니라 근육에서 생성된 다른 정보도 필요하겠다.

3) 피부에는 각기 다른 온도 대역을 감지하는 **온도 수용기**들이 있고, 이곳에서 감지된 피부 온도의 신호들은 **간뇌**의 **시상 하부**로 전달된다.

⇒ 온도의 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온도 수용기가 작동한다. 피부 온도의 신호는 최종적으로 간뇌로 전달된다. 작동 과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체크하며 읽어 두면 좋겠다.

[참고] ‘간뇌’는 척추동물 뇌의 한 부분으로 대뇌와 소뇌 사이에서 내장과 혈관의 활동을 조절하는 기관이다. 간뇌는 시상과 시상 하부로 나뉘는데, 그중 ‘시상 하부’는 내장이나 혈관 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조절하거나,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을 모두 조절한다. 시상 하부의 뇌하수체는 식욕, 성욕, 수면욕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온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4) 그러면 시상 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는 수집된 온도 정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열 작용**을 촉진한다.

⇒ 심부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방열 작용이 다르게 일어나나 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기 다른 방열 작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되겠다.

문단3 : 체온이 높아질 때의 체온 조절 시스템

1) 피부 온도가 **‘혈관 확장 역치 온도’**보다 높아지면 온도 조절 중추의 **‘혈관 확장 뉴런’**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맥락 짚기] 문단2에서 ‘평상시의 체온 조절 시스템’에 대해 두루뭇술하게 설명한 후, 좀 더 구체적인 작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용어가 좀 어렵다. ‘역치’는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다. 역치가 크면 그만큼 변화에 둔감하다는 뜻이다. ‘혈관 확장 역치 온도’에서 자극은 ‘피부 온도’일 테고, 반응은 혈관 확장이겠다. ‘혈관 확장 역치 온도’보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혈관 확장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2) 그러면 온도 조절 중추가 피부 혈관 인근의 **신경 종말**로 신호를 보내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노르아드레날린**을 방출시킨다.

⇒ 피부 온도가 높아져 혈관 확장 뉴런이 활성화되면 그다음은 온도 조절 중추에서 피부 혈관 인근에 있는 신경 끝으로 신호를 보낸단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가 보다.

3) 이 물질[→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결합하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확장**되는 작용이 나타난다.

⇒ 다음으로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결합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4) 이렇게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 단위 시간당 피부 혈류량이 늘면서 **비증발성 방열 작용**이 촉진된다.

⇒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혈관 속의 피부 혈류량 역시 늘어날 게다. 더울 때 얼굴이 상기되는 것도 이런 원리다. 이후 문단2-1)에서 설명했듯이 동맥혈이 혈액 순환을 통해 열을 잃은 뒤 찬 정맥혈이 되어 심장으로 돌아오는 작용이 일어나겠다. 단지 피부 혈류량에 의해 열이 방출되니까 ‘비증발성’ 방열 작용이라는 거다.

5) 또한 피부 온도가 더 올라서 **‘발한 역치 온도’**보다 높아지면 온도 조절 중추의 **‘발한 뉴런’**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주목] ‘혈관 확장 역치 온도’와 ‘발한 역치 온도’의 작용을 구분해서 읽어야겠다. 이는 문단2-4)에서 설명한 ‘시상 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는 수집된 온도 정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열 작용’과 관련 있다. 피부 온도가 더 오르면 ‘발한 뉴런’이 활성화되는 데 주목하자.
⇒ 이번에는 발한 역치 온도보다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즉 1)에서 말한 ‘혈관 확장 역치 온도’보다 피부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다. ‘다한증’은 땀이 보통보다 많이 나는 증상을 말하는데, ‘발한’에서 ‘한’도 땀을 뜻한다. 이때는 ‘혈관 확장 뉴런’이 아니라 ‘발한 뉴런’이 활성화된단다.

6) 그러면 온도 조절 중추가 피부의 땀샘 인근의 콜린 신경 종말로 신호를 보내 **아세틸콜린**을 방출시킨다. 이것이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하면 땀샘에서 땀이 배출되는 발한 작용이 나타난다.

[맥락 짚기] 계속 같은 맥락이다. ‘피부 온도 > 혈관 확장 역치 온도’와 ‘피부 온도 > 발한 역치 온도’인 경우의 작동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 발한 뉴런이 활성화되었으니, 땀샘 부근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번에는 콜린 신경 종말을 통해 아세틸콜린을 방출한단다. 그 결과 땀이 배출된다. 엄청 더울 때 체온이 오르면 땀이 배출되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온갖 용어가 마구 쏟아진다. 이럴 땐 머릿속에 다 넣을 순 없고, 정보의 위치만 파악하고 지나가도 된다.

7) 땀의 증발에 의한 **증발성 방열 작용**이 촉진되는 것이다.
⇒ 4)에서 말한 ‘비증발성 방열 작용’은 피부 혈관의 확장으로 열을 방출시키고, ‘증발성 방열 작용’은 땀으로 열을 방출시킨다.

8) 비증발성 방열 작용과 증발성 방열 작용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되며, 각각의 역치 온도 이상에서 온도에 비례하여 작용의 강도가 커진다.

[주목] 비증발성 방열 작용이든 증발성 방열 작용이든 피부 온도인 온열성 정보에 의존하여 작용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 맞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증발성 방열 작용’과 ‘증발성 방열 작용’은 각각 다른 과정을 거쳐 방열 작용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혈관 확장 역치 온도 이상일 때와 발한 역치 온도 이상일 때 나타나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용의 강도도 비례한단다.

역치 온도 이상에서, 온도 ↑ ⇨ 비증발성 방열 작용의 강도 ↑ 온도 ↑ ⇨ 증발성 방열 작용의 강도 ↑
--

⇒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피부 온도 > 혈관 확장 역치 온도 ↓ 혈관 확장 뉴런 활성화 ↓ 피부 혈관 인근의 신경 종말로 신호를 보냄 ↓ 노르아드레날린 방출 ↓ 노르아드레날린 + 아드레날린 수용체 ↓ 혈관 확장 ↓ 비증발성 방열 작용	피부 온도 > 발한 역치 온도 ↓ 발한 뉴런 활성화 ↓ 피부 땀샘 인근의 콜린 신경 종말로 신호를 보냄 ↓ 아세틸콜린 방출 ↓ 아세틸콜린 + 무스카린 수용체 ↓ 땀샘에서 땀이 배출 ↓ 증발성 방열 작용
--	--

문단4 : 운동 시의 체온 조절 시스템

1) 운동 시의 방열 시스템 작동에는 온열성 정보와 함께 근육이 팽팽한 정도나 혈압 등 비온열성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맥락 짚기] 문단1-3)에서 말한 평상시와 다른 ‘운동 시의 방열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차이점에 주목해야겠다.

⇒ 평상시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피부 온도와 같은 온열성 정보에만 의존하여 작동한다는 문단2-2)에서 설명한 내용과 차이점을 확인해야겠다. 그러니까 운동 시에는 온열성 정보뿐만 아니라 비온열성 정보까지 반영해서 작동한단다.

평상시	⇨	온열성 정보에만 의존하여 작동
운동 시	⇨	온열성 정보 + 비온열성 정보로 작동

2) 운동 시에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다량의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서 피부 혈관이 수축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비증발성 방열 작용으로 인한 방열량이 평상시보다 줄어든다.

[Rew] 문단1-5)에서 ‘운동 시에 평상시와 다른 방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답이다. 평상시보다 열은 더 많이 나는데도 피부 혈관의 확장 작용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 운동을 하면 역시 피부 온도가 높아질 테니 혈관이 확장될 텐데, 오히려 근육에 피가 쏠려서 혈관이 수축된단다. 피부를 통해 자연스레 산열이 방출되는 비증발성 방열 작용이 줄어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산열이 방출되어야겠다.

3) 그래서 운동이 시작되어 [근육의 팽팽한 정도나 혈압] 관련 비온열성 정보가 전달되면 온도 조절 중추는 평상시보다 ‘혈관 확장 역치 온도’를 높이고 ‘발한 역치 온도’를 낮춘다.

⇒ 운동을 하면 산열량이 급격히 늘어나 방열량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근육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므로, 비증발성 방열 작용은 좀 줄이고, 대신 땀의 증발에 의한 증발성 방열 작용은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비증발성 방열 작용을 줄이기 위해 ‘혈관 확장 역치 온도’는 높이고, 증발성 방열 작용을 늘리기 위해 ‘발한 역치 온도’는 낮추는 거다.

4) 근육을 사용해야 하니 비증발성 방열량이 평상시보다 줄어든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대신 가급적 빨리 땀이 많이 나도록 하여 증발성 방열량을 늘리는 것이다.

⇒ 맞다. ‘발한 역치 온도’가 낮아질수록 증발성 방열 작용이 잘 일어나 땀이 많이 나겠다. 이에 따라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을 게다.

운동 시작 ⇨ 비온열성 정보 전달 혈관 확장 역치 온도 ↑ ⇨ 비증발성 방열 작용 ↓ 발한 역치 온도 ↓ ⇨ 증발성 방열 작용 ↑
--

문단5 : 강한 운동 시의 체온 조절 시스템

1) 운동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혈관 확장 역치 온도’는 점차 높아지지만 ‘발한 역치 온도’는 달라지지 않는데, 이는 발한량을 지나치게 늘리면 과도한 탈수로 인해 인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철인 3종 경기나 마라톤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지나치게 땀을 흘릴 경우를 대비해 이온 음료를 준비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도한 탈수를 막기 위해 소금을 먹기도 한다. 땀도 지나치게 흘리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2) 대신 온도 조절 중추는 운동 강도가 강해질 때 부위별 발한량을 조절하여 신체의 전체적인 방열량을 더 늘린다.

⇒ 특이하다. 심한 운동을 하면 신체의 부위별로 땀이 나는 양이 달라진단다. 목적은 ‘전체적인 방열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발한 역치 온도를 낮추면 발한량이 늘겠지만 1)에서 설명했듯 발한 역치 온도는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발한량을 늘렸는데, 신체 부위별로 발한량을 다르게 해서 전체적인 방열량을 늘린다는 소리다.

3) 운동 강도가 세지면 몸통의 발한량을 줄이되, 주름이 더 많아 표면적이 넓은 팔다리 부위의 발한량을 늘려서 방열 효과를 더 높여 방열량을 늘리는 것이다.

⇒ 몸통에선 땀이 덜 나오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주름이 많은 부위에서 땀이 더 많이 나온단다. 가성비를 따지는 거다.

4) 운동 강도가 매우 강해지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대뇌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마에 발한을 집중하기도 한다.

⇒ 인체는 체온 조절 시스템을 통해 다른 체내 기관보다 대뇌를 1순위로 보호한다. 마라톤을 할 때 이마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오면 시야를 가려 선수들은 뛰는 데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선수들이 헤어밴드를 착용하나 보다. 정보가 무척 많은 지문이어서 우리도 이마에서 땀 난다. 고생들 했다.



* 수록 지문 평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홍보’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고 보답을 받아 잘 살게 되고, ‘부유하지만 심술 사나운 형 놀보’는 동생을 괴롭히고 나쁜 짓만 일삼다가 결국 망한다는 얘기는 다들 잘 알고 있겠다. 인물이 놓인 처지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익살과 해학, 풍자 속에 재미있게 서술하면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통을 매우 절절하게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돈의 위력 앞에서 양반의 체면이고 위신이고를 다 던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된 조선 후기 몰락 양반의 비참한 현실, 형제 사이의 의리나 윤리마저 무너지고 물질적 가치관이 우선하게 된 현실 등이 잘 그려져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며 읽어 보자.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홍보가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기로 약속하다

홍보 아내 품을 판다.[→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샅빨래질(= 샅을 받고 빨래를 해 주는 일) 빨래품과, 곡식 찢기[→ 수확한 곡식의 깍지를 벗기고 쭉정이를 골라 알곡을 거르는 일] 방아품[→ 디딜 방아나 물레방아로 곡식 찢는 일을 품삯을 받고 해 주는 일]과, 유월 염천(炎天, 몹시 더운 날씨) 김매기(= 논밭의 잡초를 뽑는 일), 혼인 대사(大事) 음식 하기, 초상난 데 제복[→ 상복] 짓기, 구시월에 김장하기, 엄동설한 추운 날에 삼베 중의(中衣, 남자용 여름 홀바지) 대님 매고[→ 남자 옷이라 크니까 흘러내리지 않도록 대님을 땀다.] 이 집 저 집 물 지기[→ 물을 나르는 일]와, 온갖 품을 다 팔아도 사대(四大) 명절 제사 때나 밥맛 보던 것이었다. 이렇듯 곤궁하니 어찌 아니 불쌍한가. 하루는 홍보 양주(兩主, 부부) 하는 말이,

“내가 읍내를 들어가 환자(還子) 호방(戶房, 백성에게 관청의 곡식을 빌려주는 일을 맡은 향리)을 보고 환자(= 환곡) 섬(= 가마니)이나 타다 먹겠네.”

⇒ 홍보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한 일들은 모두 힘이 들어 남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이다. 그런데 힘든 일만 골라서 열심히 해도 명절 제사 때나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기만 하다. 그러니 관아에 들어가 곡식을 꾸어 오겠다는 이야기다.

홍보 아내 하는 말이,

“맙쇼 맙쇼 그리 맙쇼. 빈천한 이 사람이 환자 섬이 될 말인가. 걱정 말고 그만두쇼.”

“죽으면 대순가.”

홍보 아내 필쩍 뛰며,

“죽는단 말 웬 말이오. 천금 일신(千金一身, 천금보다 내 한 몸이 귀함) 그대 말이 일시 구업(一時救業, 당장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일) 하자 하고 명재경각(命在頃刻,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웬일인가. 가지 마오. 가지 마오.”

⇒ 곡식을 꾸면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에 홍부는 곡식을 못 갚아 죽을 만큼 큰 벌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거다. 나라의 곡식을 빌리고 못 갚으면 죽는 일이 흔하던 현실을 그리고 있다.

홍보 떨떨거리고 읍내로 가서 환자 호방을 만나,

“나 들어왔소.”

“아, 그새 잘 있는가? 자네 어찌 들어왔나?”

홍보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굶어 누웠는 자식 살려 낼 길 없습기에 호방님께 그 말 씀 하고 환자 섬이나 타다 먹자고 왔소.”

“자네 형이 종이 살지.”[→ 형이 잘사는데 왜 곡식을 꾸러 왔느냐는 말이다.]

“잘 살지요마는 가난 내력을 어찌 일상(日常) 말하오리까.”[→ 가난한 사정을 형에게 계속 말할 수는 없다는 대답이다.]

호방 이른 말,

“자네 그러면 곤장 여남은 대 맞아 보려나?”

홍보 깜짝 놀래어 하는 말이,

“동냥은 못 주나마 쪽박조차 깨려고 곤장을 치시려 하니 차마 그게 할 말이오?”

“그 때가 자네에게 유조(有助)한(= 도움이 되는) 때로세.”

“매도 유조한 때가 있소? 맞으면 아프지요.”

“아니 그렇지 않다네. 이 골 좌수(座首, 조선 시대 지방 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가 병영(兵營)[→ 여기서는 병마절도사가 있는 영문(營門)을 말한다.]에 매 맞으러 내일모레 가는데 아무라도 대신 가면 선(先)돈[→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지불하는 돈] 닷 냥 주리라 하되 갈 사람이 없네. 자네 가소.”

홍보가 그제야 헛웃음 웃고 한 발자국 들어서며,

“아, 참말이오?”

“내가 점잖게 헛말 할까.”

홍보 하는 말이,

“그러하면 선돈 닷 냥은 웬 돈이오?”

“닷 냥은 마(馬)삯[→ 말을 부림에 대한 삯. 병영에 매 맞으러 가기 위한 차비, 일종의 착수금인 셈이다.]일세.”

“그러면 닷 냥을 지금 주시오.”

“그리하소.”

돈 닷 냥 내어 주니 홍보 받아 꿈무늬에 늦추어 차고,

“호방님, 그리하오. 내 다녀오리다. 은혜는 백골난망(=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갚을 길 전혀 없소.”

⇒ 홍보가 환자 곡식을 빌리러 갔다가 남의 곤장을 대신 맞아주기로 약속하고 돈 닷 냥을 받은 거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고생하던 홍보 부부는 우연히 제비를 구해 주고 보답으로 박씨를 받아 심는다. 가을이 되어 열린 박들을 타자 온갖 보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토막2 : 홍보 부부가 박을 타서 갖은 보물을 받고 기뻐하다

[박 하나를] 슬근슬근 툇 타 놓으니 동자(童子, 남자 아이) 한 쌍 나온다. 저 동자 거동 보소. 약비봉래환학동(若非蓬萊喚鶴童)이면 필시천태채약동(必是天台採藥童)이라[→ 만약 봉래산 학 부르는 동자가 아니면 틀림없이 천태산 약초 캐는 동자로다. 두 경우 다 신선을 모시는 동자라는 의미이다.]. 머리에 벽도화(碧桃花)요, 몸에는 청학기(靑鶴旗)라.[→ 머리에 장수를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푸른 복숭아꽃을 꽂았고 몸에는 푸른 학이 그려진 깃발을 들렀더라. 역시 신선 세계의 인물이라는 이야기다.] 좌수(左手)에 백옥반(白玉盤)과 우수(右手)에 대모반(玳瑁盤)을[→ 왼손에 하얀 옥을 깎아 만든 소반과 오른손에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소반을] 눈 위에 번듯 들고 은근히 나오더니[→ 귀하고 비싼 물건을 눈 위로 받들고 조심스레 나온다는 것은 홍보 부부를 공경한다는 의미겠다.] 홍보 양주 앞에 문안하니, 홍보 양주 대경(= 크게 놀람)하야,

“어떠하신 도련님이 미천한 나를 보고 이다지 관대하오?”

동자 답 왈,

“그러한 게 아니오라 홍보 씨 어진 마음 우리 황제[→ 제비국의 황제를 말한다.] 아옵시고 선약(仙藥, 신선이 만든다고 하는 장생불사의 영약)을 보내시매 소동(小童)이 왔사오니 놀라지 마옵시오.”

홍보 이른 말이,

“보물인 줄 알았사오나 저것은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이오?”

동자 이른 말이,

“천은병(天銀甁, 품질이 가장 뛰어난 은으로 만든 병)에 든 것은 죽은 사람 혼을 불러 살려 내는 환혼주(還魂酒, 죽은 이의 넋을 살리는 술)요, 금전지(金箋紙)에 봉한 것은[→ 보자기로 싸고 네 귀퉁이를 금종이로 장식해서 봉한 것은] 귀먹은 사람 귀 절로 밝는 벽이초(關耳草)요, 유리 접시 담은 것은 죽지 않고 늙지 아니하는 불로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이오니, 값으로 의논하면 만 냥이나 되오나 받아 두시옵소서.” 한 걸음 두 걸음에 홀연 간곳없다.

홍보 양주 받아 들고 서로 보며 춤을 춘다. 또 한 께를 열고 보니 천여 석 땅문서와 수백 명 종 문서가 가득하니, 종 문서 손에 들고 차례로 호명하니 앵무 같은 여종이며 허저(許褚,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조조 수하의 용맹한 장수) 같은 남종들이 전립(= 조선 시대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 젖혀 쓰고 흐늘거려 들어와서,
“소비(小婢) 등 문안드리오.”



[23~26] 고전시가 : 안도환, 「만언사」

* 수록 지문 평가

사대부 양반이 아닌 중인의 유배 가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조 임금 때에 임금의 심부름을 하던 대전별감 벼슬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의 이름은 이본에 따라 ‘안조원’, ‘안조환’ 등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적혀 있는데, 최근 『송정원일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안도환(安道煥)’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나왔다.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추운 빈 방에서 잠을 청하다

구차한 손의 방(房)에 불김(=불을 때서 얻는 더운 기운)이 쉬울쏘나
섬거적(=곡식 가마니를 뜯은 거적) 뜯어 퍼니 선단(仙緞) 요(=신선의 비단으로 만든 요)가 되었거늘

개가죽 추켜 덮고 비단 이불 삼았세라

⇒ 섬거적과 개가죽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건들이다. 이것들을 신선의 비단으로 만든 요와 비단 이불처럼 여긴다는 것은 화자의 현재 신세가 무척이나 비참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사람 없는 빈방 안에 게 발 물어 던진 듯이

새우잠 곱송그려 긴긴밤 새워 날 제

우호로[→ 위로, 위에서] 한기(寒氣) 들고 아래로 냉기(冷氣) 올라

이름은 온돌이나 한데[→ 집의 바깥]만도 못하고야

⇒ 위 아래로 차가운 기운이 드는 방에서 웅크려 잠을 청한다. 명색이 온돌방이지만 바깥보다 나은 게 없는 곳이다. 스스로의 가련한 처지가 한탄스럽다.

(중략)

토막2 : 아침에 일어나 새삼스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새벽닭 화해 우니 반갑다 닭의 소리

단봉문(丹鳳門) 대루원(待漏院, 이른 아침 관원들이 궁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에 개문(開門) 대기하던 때라

새로이 눈물지고 장탄식(長嘆息)하는 때에

⇒ 아침이 밝았는데, 유배 가기 전 이 시간이면 궁궐 밖에서 궁궐 문이 열리기를 대기하곤 했었다. 그 생각이 나서 새삼 서러워진다.

동창(東窓)이 이미 밝고 태양이 높았으니

게을리 일어앉아 곱은 다리 퍼올 적에

삭다리를 조기는 듯(=마른 나뭇가지를 꺾어 부러뜨리는 듯) 마디마디 소리 난다

⇒ 추운 방에서 웅크리고 잤으니 온몸이 굳어서, 다리를 펴 보니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뚝뚝 난다.

돌담뱃대 잎담배를 쇠통 불에 붙여 물고[→ 제대로 된 담뱃대나 담뱃불이 아닌, 초라한 모양새를 말한다.]

양지(陽地)를 따라 앉아 옷에 이 주워 낼 제[→ 옷에는 이가 들끓는다.]

아니 빗은 흠은 머리 두 귀 밑을 덮어 있네[→ 머리를 빗거나 몸단장을 할 마음도 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내 형상 가련하다 그려 내어 보내고프네

오색단청(五色丹青) 진하게 메워 그리운 데 보내고저

⇒ 지금의 이 불쌍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그리운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 이왕이면 색색 물감으로 칠해서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 정의(情誼,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 깊은 정(情)을 만(萬)에 하나 읊겼으면

오늘날 이 고생은 몽중사(夢中事, 꿈속의 일)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편지도 못 전하니

초수 오산(楚水吳山, 초나라의 물과 오나라의 산. 지리적으로 험하고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 천만 겹에 내 그림을 뉘 전하리

⇒ 나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이 고생은 꿈처럼 없던 일이 될 텐데. 즉 나의 마음을 임금이 알면 불쌍히 여겨 귀양에서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의 마음이 들어 있다. 하지만 유배로 멀리 떠나온 몸이라 소식도 전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랑스럽다 이 별이야 얼었던 몸 녹는고나

백 년(百年)을 쫓이온들 싫다야 하라미는

어이한 조각구름 이따금 그늘지니

찬바람 지나칠 제 별을 가려 애처롭다

⇒ 추워서 움츠러들었던 몸을 녹여 주는 햇별이 사랑스럽기만 하다. 백 년 동안 쫓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고맙고 소중한 햇별이 가끔씩 조각구름에 가려지면 추워지니 안타깝고 애처롭다. 고전 시가에서는 ‘해’나 ‘햇별’이 임금의 은혜를, ‘구름’이 간신을 가리킬 때가 많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별’은 그냥 햇별이고, ‘구름’은 그냥 구름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겠다.

토막3 : 밤이 되자 답답하고 외로운 처지를 떠올리며 한탄하다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셀꼬

이 밤을 지내온 후 오는 밤을 어찌하리

잠이라 없거들랑 밤이나 짜르거나

하고한(=많고 많은)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운 이 생각하고 살뜰히 애석(哀惜, 슬프고 아까움)일 제

목숨이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 고민이 많으니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밤이 오는 것이 걱정이다. 밤마다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밥을 먹고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인간 만물 생긴 중에 날날이 헤어 보니

모질고 단단한 이 나뭇에 또 있는가

심산 중(深山中) 호랑이가 모질기 나 같으며

돌 깨치는 철 몽둥이 단단하기 나 같으랴

⇒ 생각해 보니 내가 제일 모질고 단단하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또다시 하루를 맞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모질고 단단한가. 깊은 산 속의 호랑이나 돌도 깨뜨리는 철 몽둥이보다 더하다. 자신이 모질고 단단하다고 하면서, 처해 있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비참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모 장지 세살장지 완자창(=창살을 ‘만자(卍字)’ 모양으로 만든 창)을 갖춰 내어

이같이 답답할 제 여달아나 보고 지고

⇒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차라리 가슴에 구멍이 나서 창문이 뚫려 있다면 덜 답답할 것 같다.

어와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찌하리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人間離別) 나 혼자라

소무(蘇武, 적국에 사신으로 가서 오래 잡혀 있다가 고국에 돌아간 인물)의 북해 고생(北海苦生)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歸不歸,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끝내 돌아가지 못함) 설마 하라

⇒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인 것도 아니라며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옛날 ‘소무’라는 충신이 적국에 붙잡혀 고생하다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나 역시 그렇게 이 귀양을 마치고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설마 이렇게 고생하고 끝내 돌아가지 못하기야 하겠느냐. 자신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참고 자료

안도환의 귀양살이

작가가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에서도 제주도 방향으로 한참 더 내려가야 하는 추자도에 유배를 당한 것은 임금의 도장을 도용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입증하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나름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려다 패배를 겪고서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러 유배당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 사상범이 아니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형사범이라는 애기다. 정치적 이유로 귀양을 간 사대부의 가사에서 억울하다며 자신의 진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흔히 볼 수 있는 데 반해, 이 작품에는 귀양살이의 상황 속에서 겪는 힘겹고 비참한 체험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해학과 유머도 담겨 있다. 열 가지 넘는 이본들이 남아 있을 만큼 당대에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하며, 특히 서울에 전해져 궁녀들 사이에 많이 읽혔다 한다. 이러한 호응 덕분에 일찍 풀려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지만, 이 또한 확인할 수는 없다.



[27~32] 사회 : 징벌적 손해 배상의 산정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현재 가치, 편익, 외부 효과

사회 - 법학 - 손해 배상 책임

불법 행위, 민사 책임, 손해액, 총손해액, 배상액, 배상 원칙,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 억지 효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 방지 비용, 징벌적 손해 배상액, 징벌 승수, 형사 책임, 범죄

* 지문 분석

문단1 : 불법 행위와 비용 편익 분석

1)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 책임이 있다.

⇒ 그렇겠다.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마땅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우리 민법이 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을 게다.

[참조] 고의는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라면, 과실은 행위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채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돌을 던졌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돌에 맞을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했음에도 돌을 던졌으면 그건 '고의'다.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맞힐 수 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면 그건 '과실'이다.

2)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비용 편익 분석이 사용되곤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 현재의 비용]에 미래에까지 이어질 손해액[→ 미래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하고 현재의 비용은 물론, 미래의 비용까지 반영하여 손해액을 산출한다. 한마디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일종의 '비용'을 뜻하지 않게 지불하게 된 셈이다.

손해액 = 이미 발생한 손해액 + 현재 가치[→ 미래에까지 이어질 손해액]

3) 피해자의 편익으로 간주되는 배상액은 법체계의 배상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 비용]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배상액'은 피해자의 '편익'으로 간주된다.

[참조] '손해액'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배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즉 배상 원칙이 우리의 관심사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상액 = 손해액'이 최선일 게다. 만약 피해자의 '편익'이 피해자의 '비용'보다 작아진다면[→ 배상액 < 손해액] 피해자에게 불공평한 일일 게다. 그렇다고 반대로 피해자의 '편익'이 피해자의 '비용'보다 커진다면[→ 배상액 > 손해액],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문단2 :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

1) 본래 우리 법체계에서의 기본적인 배상 원칙은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가 완전히 메우는[→ 피해자의 '손해'만큼을 배상액으로 지급하는] '전보적(全補的) 손해 배상'의 원칙이다.

⇒ 한마디로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은 '배상액 = 손해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2) 이는 손해액 전부를 가해자가 배상토록 하여, 공평성을 기할 뿐 아니라 불법 행위를 억지(抑止)하는 효과를 낳는다.

⇒ 그렇겠다.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은 피해자에게 공평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누르는 '억지 효과'를 낳기도 한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끼친 손해만큼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니 말이다.

3) 다만 행동상의 주의나 안전 설비의 설치 등 가해자가 불법 행위의 방지를 위해 기울이는 주의, 즉 '방지를 위한 주의'에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

⇒ 당장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행동상의 주의' 역시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제빵사가 '행동상의 주의'를 기울이느라 평소보다 빵을 10개 덜 생산했다면, 그 빵 10개의 가격이 '방지를 위한 주의'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있겠다.

4) …… 손해액의 전부가 배상액으로 온전히 부과되지 못하여 이 비용이 배상액보다 더 크면 억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 중요한 지적이다. 만약에 '방지를 위한 주의'에 소요되는 비용이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액보다 크다면, 잠재적 가해자 입장에서는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느니, 그냥 잠재적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배상액을 지급하는 게 더 싸게 먹힐 게다.

[주목] 따라서 배상 원칙의 핵심은 '손해액의 전부가 배상액으로 온전히 부과되도록 하는 데'에 있겠다. 그래야만 충분한 억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예컨대 [잠재적 가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야기될 손해가 100만 원일 때 ……

⇒ 3), 4)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다. 일단 '손해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해 보자는 얘기다.

6) …… 잠재적 가해자가 80만 원의 비용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

⇒ '방지를 위한 주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80만원으로 가정해 보자.

7) …… 전보적 손해 배상의 실현 가능성은 잠재적 가해자로 하여금 '방지를 위한 주의'의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에 따르면 잠재적 가해자는 손해를 끼쳤을 때 100만 원 손해액만큼을 잠재적 피해자에게 배상해야만 한다. 그보다는 80만 원을 지불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더 싸게 먹힐 게다. 따라서 잠재적 가해자가 합리적이려면 '방지를 위한 주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게다[→ 불법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게다].

8) 그러나 50만 원만 배상해도 된다면 그는 그 방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주목] 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50만 원이 손해액 100만 원보다 적은 액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 만약에 가해자가 손해액보다 덜 배상해도 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느니,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게다. 따라서 잠재적 가해자가 합리적이려면 '방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게다[→ 불법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게다].

9) 한편 가해자가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하면 '방지를 위한 주의'가 과도해져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 그렇다고 무작정 배상액을 높여서,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하게 만든다면, 가해자는 '방지 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여 최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게다. 피해자가 안 생길 거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가해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과도하게 방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역시 사회적 낭비다.

[핵심 짚기] 결과적으로 '배상액'은 손해액보다 적어도 안 되고, 손해액보다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메우는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이 중요한 게다.

문단3 : 외부 효과의 문제

1) 그런데 현실에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또한 손해 배상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편익’보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 맞다. 모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문단2-8), 9)처럼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액’이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가 아니다. 그냥 현실의 현실적인 문제다.

2) 그래서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만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외부 효과가 온전히 제거되기 힘들다.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특정 행위가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치고도 대가를 받거나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 한마디로 ‘불법 행위로 인한 외부 효과’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피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참조] ‘의도하지 않은 손해’라고 ‘고의에 의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단1-1)의 [참조]에서도 설명했지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는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한 결과지, 손해를 끼치는 것 자체를 의도한 결과는 아니다. 손해를 끼치는 것 자체가 의도였다면 그건 ‘범죄’에 불과하다. ‘처리 비용이 아까워서 공장 폐수를 하천에 버리는 것’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하려고 공장 폐수를 하천에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3) 가령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이 자신이 끼친 손해들에 대하여 네 번에 한 번꼴로, 즉 1/4의 확률로 민사 책임을 진다고 가정해 보자.

⇒ ‘불법 행위로 인한 외부 효과’에 대한 예시다.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네 번에 한 번꼴로 적발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다. 즉 나머지 세 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않는 외부 효과가 문제 될 게다.

4) 전보적 손해 배상액이 100만 원이면 각각의 손해를 80만 원의 비용으로 방지할 수 있더라도 가해자들은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전보적 손해 배상으로 각 손해에 대해 25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 피해자의 ‘손해액’이 100만 원일 때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배상액’은 100만 원으로 책정될 게다. 따라서 개별 피해자의 손해액은 전부 메워질 수 있겠지만 가해자는 네 번 중 한 번꼴로 민사 책임을 지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25만 원[→ 100만 원 ÷ 4]의 배상액만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피해자	가해자		
손해액	책임 여부	배상액	실질적 배상액
100만 원	×	0 원	25만 원
100만 원	×	0 원	
100만 원	○	100만 원	
100만 원	×	0 원	

[Rew] 가해자가 네 번에 한 번꼴로만 민사 책임을 진다면, 가해자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게다. 개별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면 8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실질적 배상액은 2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단2-8)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결국 ‘불법 행위로 인한 외부 효과’ 때문에,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외부 효과로 인한 문제의 핵심일 게다.

5) 이처럼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만으로는 억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이 제기되었다.

⇒ 따라서 기본적인 배상 원칙인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인데.....

문단4 :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

1)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은 적발된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액을 정할 때 실제의 손해에 해당하는 배상액[→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에 의한 배상액]에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더하는 원칙이다.

⇒ 기존의 ‘전보적 손해 배상’의 원칙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은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요구한다.

2) 이는 징벌의 목적뿐 아니라, ...

⇒ 애초에 ‘징벌적’ 손해 배상인 만큼 당연히 징벌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게다. ‘전보적 손해 배상’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3) 그동안 발생했던 **총손해액**만큼을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불법 행위의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도 지닌다.

[주목] 집중하자. 이번에는 ‘손해액’이 아니라 ‘총손해액’이다.

[Rew] 딱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하다. 문단3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외부 효과 때문에 불법 행위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은 외부 효과까지 감안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의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4) 가해자가 불법 행위마다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1/4의 확률로 배상한다면, 가해자는 한 번의 손해 배상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불법 행위로 총 400만 원[→ 100만 원 × 4]의 손해를 발생시킨 셈이다.

⇒ 문단3-3), 4)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겠다.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개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100만 원이었지만, 네 번에 한 번꼴로 책임을 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발생시킨 총 손해액은 400만 원이 된다.

5) 이 가해자에게 4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부담시키면 그는 80만 원씩 네 번의 방지 비용[→ 32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가 **총손해액**[→ 400만 원]만큼 부담해야 불법 행위가 억제된다.

⇒ 됐다.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실제로 끼친 총손해액만큼을 ‘배상액’으로 요구한다면, 가해자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게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게다.].

[Rew] 개별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었을 때, 개별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액’ 100만 원을 전부 가해자가 메워야 한다면, 가해자는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 비용’ 8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할 테니 불법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는 문단2-7)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 이제야 불법 행위로 인한 외부 효과가 온전히 해소된 게다.

문단5 : 징벌 승수

1) 총손해액에서 전보적 손해 배상액을 제외한 부분, 즉 추가로 덧붙여진 배상액을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라 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P라 할 때 이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P = \frac{1-r}{r} \times D$$

⇒ 친절하게도 수식을 직접 제시해줬으니 잘 써먹도록 하자.

2) 여기서 r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확률이고, D는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전보적 손해 배상액이다. 이 식은 가해자가 끼친 총손해액인 ‘D × (1/r)’에서 D를 뺀 것으로, ...

⇒ 문단4-4)의 상황을 끌어오자면, r이 1/4, D가 100만 원일 게다. 따라서 총손해액은 400만 원[→ 100만 원 × 4]이 맞다.

3) ‘(1-r)/r’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피할 확률/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확률’로 **‘징벌 승수’**라 한다.

⇒ ‘징벌 승수’가 클수록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피할 확률은 높아지고, 총손해액 역시 커질 게다. 결과적으로 ‘징벌 승수’가 높을수록, 배상액도 높게 책정될 게다.

- 4) 1/4의 확률로 법적 책임을 진다면 징벌 승수가 3인 셈이다.
 ⇒ $(1-1/4)/(1/4)$ 을 계산해 보면 되겠다. 이걸 산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 총손해액 = 배상액 = 전보적 손해 배상액(D) + 징벌적 손해 배상액(P)
--

문단6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

- 1)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다. 우리 법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엄격히 분리하고 처벌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해서만 오로지 형벌로 국가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
 ⇒ 불법 행위는 문단1-1)에서도 설명했지만 ‘민사 책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범죄를 다루는 ‘형사 책임’과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 2) 민사 책임에 **징벌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징벌적 요소’는 처벌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과 과실은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그것이다. 불법 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행위도 포함하지만, 범죄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인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Rew] 문단4-2)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은 징벌적 요소를 포함한다. 이는 민사 책임을 형사 책임처럼 다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비판이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겠다.
[참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결국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를 구분함으로써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민사 관계’는 사사로운 개인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철수가 민호의 다리를 부러트려서 민호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면, 가해자 철수는 피해자 민호에게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 관계’는 형벌권을 지닌 국가와 범죄를 저지른 개인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철수가 민호에게 병원비를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민사 책임을 해결했더라도], 국가는 형법을 근거로 삼아 상해죄로 민호를 처벌할 수 있다. 사인 간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범죄 사실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 3) 또한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 소송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피해자가 **과도한 이익**[→ 총손해액 - 전보적 손해 배상액]을 얻게 되는 만큼 기업의 사소한 잘못에도 소송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비판이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원칙에 의해 **총손해액**[→ 400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개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 전보적 손해 배상액,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지나치게 빈번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타당한 얘기긴 한데..... 다소 구질구질하다. 애초에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
- 4) 그러나 형벌로써 처벌하기 곤란하지만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고의나 과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억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우리 법체계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 2), 3)과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의 억지 효과를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실제로 도입됐다는 얘기다. 다만 민사 책임 일반에 도입되지는 않았고, 하도급법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도입되었었다.

[참조] 알 필요는 없지만..... ‘하도급’은 쉽게 말해서 자신이 완성시켜야 하는 일[→ 도급]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맡기는 주체를 ‘원사업자’라 하고 맡는 주체를 ‘수급 사업자’라고 한다. 현대자동차가 부품 업체에 부품 제작을 맡기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도급법’에 최초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원사업자가 지배적 위치에 있는 만큼,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동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문단7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적용

- 1) 현재 하도급법 등은 [개별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마디로 가해자에게 최대 전보적 손해 배상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조] 이는 ‘징벌 승수’가 최대 2라는 얘기다. 이는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확률이 최소 1/3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은 과도한 배상액이라는 일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게다.
- 2) 또한 이때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한 정도, 타인이 입은 피해 규모, 벌금이나 과징금의 부과 여부, 불법 행위의 횟수 등을 법원이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이미 수차례 반복된 것이었다면 더 많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 요구될 게다.
- 3)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 배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률이나 조항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됐다. 무난한 마무리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서양 회화 - 미래파

미래파, 마레, 생리학, 크로노포토그래피, 발라, 「바이올리니스트의 손」, 포토 다이너미즘, 다이너미즘, 브라갈리아, 「첼리스트」

* 지문 분석

문단1 : 미래파에 영감을 준 사진

1) 사진은 그 태동부터 순간의 자국을 남기는 데에 매달려 왔다. 이는 대상을 재현하며 정적인 비레나 조화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온 회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 사진은 순간의 자국을 남기는 데, 회화는 정적인 비레나 조화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에 주목했다는 거다. 사진이나 회화는 ‘대상을 재현’했다는 측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2) 회화에서 움직임을 묘사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대상의 움직임’을 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대상’의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다.

[주목] ‘대상의 움직임을 담는 것’과 ‘움직이는 대상의 순간을 포착한 것’이 다른 의미라는 점에 주목하자.

⇒ ‘순간의 자국’이 가리키는 것은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이겠다. 그런데 아무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대상의 ‘순간’을 찍어 내더라도 그건 순간에 불과한 만큼, 결코 움직임을 담아내지 못한다. 아무래도 실제 움직임을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거 같은데.....

[참고] 다음 그림은 드가의 「스타」인데, ‘움직이는 대상’의 순간을 잘 포착한 대표적인 그림이다.



3) 기계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 접해 보지 못했던 속도를 경험하게 된 20세기 초, 일군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미학과 관습을 비웃고 “세상을 새로운 아름다움, 속도의 미(美)로 채울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Rew] ‘기존의 미학과 관습’은 대상을 재현하여 정적인 비레나 조화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 회화적 전통을 말하겠다.

⇒ 20세기 초에 등장한 일군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미학과 관습에 반대하며, ‘속도’를 새로운 미학으로 주장했나 보다. ‘속도’는 당연히 ‘대상의 움직임을 담는 것’이겠다.

4) 사진은 이들 미래파에게 영감(= 창조적인 자극이나 착상)을 주었고, 미래파의 실험에 의해 사진은 ‘대상의 움직임’을 담는 매체가 될 수 있었다.

⇒ 3)에 제시된 일군의 예술가들이 미래파였다. 미래파의 등장에 사진이 계기가 되었고, 미래파가 주목한 것은 ‘대상의 움직임’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회화처럼 ‘움직이는 대상의 순간을 포착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미래파에게 영감을 주게 된 걸까?

문단2 : 크로노포토그래피

1) 미래파를 자극한 것은 과학자 마레가 생리학 연구를 위해 고안한 크로노포토그래피였다. 이는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초당 여러 번 규칙적으로 다중 노출하여 조각조각 나뉜 연속 동작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찍는 사진술을 말한다.

[맥락 짚기] 문단1-4)에서 말한, 미래파에게 영감을 준 사진 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렇겠다. 크로노포토그래피라는 사진 기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진과는 좀 다르다. 움직이는 대상을 여러 번 노출하여 찍은 동작들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낸다면, 이는 ‘대상의 움직임’을 담을 수 있겠다. ‘마레’는 미래파를 자극한 과학자이지, 미래파는 아니다.

[참조] 다음 사진은 1886년 프랑스 생리학자 쥘 마레가 동물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해 찍었다. 과학자의 연구를 위한 사진이라, 제목도 없다. 그러나 사진에 드러난 백마의 모습이 몽환적이며 초현실적이어서 당시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되었다.



2) 대상의 본질을 형상에서 찾았던 전통적 화가들과 달리 미래파는 움직임에 그 본질이 있다고 여겼는데, 움직임의 순간들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 이 사진술이 움직임의 표현에 대한 영감을 제공한 것이다.

[Rew] 전통적 화가들이 대상의 본질을 ‘형상’에서 찾은 것은 문단 1-3)에서 말한 ‘기존의 미학과 관습’이 되겠다.

대상의 본질		
전통적 화가들	↔	미래파
형상		움직임

3) 다만 크로노포토그래피는 예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힘들었다. 그 무미건조한 규칙적인 리듬은 생명의 약동과 거리가 멀었고 마치 나비의 움직임을 분석적으로 분해하여 하나하나 핀으로 고정시켜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크로노포토그래피의 한계가 되겠다. 크로노포토그래피가 보여준 대상의 움직임은 무미건조한 규칙적 리듬, 분석적인 분해에 불과해서 그 자체로는 예술로 직접 사용하긴 힘들었다. 미래파가 추구한 ‘움직임’은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생명의 약동이였다. 그래서 미래파는 크로노포토그래피의 사진 기법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예술적 방법을 만들었겠다.

문단3 : 발라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손」

1) 발라의 그림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은 크로노포토그래피의 사진을 연상시킨다. 바이올린 활을 켜 연주자의 손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파의 실험주의적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움직임을 드러내려면 당연히 속도감 있게 움직임이 잘 드러나는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은 이런 특징을 잘 보여 주겠다.

[참고] 자코모 발라는 이탈리아의 화가다. 초기에는 인상파적 화풍으로 그렸으나 1910년 미래주의 선언에 서명한 이후 미래파의 기수가 되었다. 이후에는 미래주의를 떠나 구상주의 경향으로 돌아갔으며 미래주의에 소극적으로 재접근하기도 하였다.

2) 그런데 그것은 기계적인 리듬[→ 크로노포토그래피]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전해지는 듯 하얀 선들이 뚜렷하게 길게 이어져 있어서 운동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또한 배경과 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듯 미묘한 차이를 지닌 색들이 상호 침투하도록 칠해져 있어서 비물질화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 발라의 그림이 보여 주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힘’은 문단2-3)에서 말한 ‘생명의 악동’이 되겠다. 불규칙한 연속, 생생한 운동감, 배경과 손 사이의 경계에 드러난 색을 통해 발라의 그림은 ‘비물질화’의 특성을 보여 준단다. ‘비물질화’가 ‘물질이 아님’은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3) 이[→ 비물질화]는 형태가 허물어져서 물질성이 축소되고 운동감만 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법들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바이올린 연주자의 손 떨림을 상상하게 한다.

⇒ 발라의 그림이 드러낸 비물질화가 의미하는 바가 소개되었다. 배경과 손 사이의 경계에 미묘한 차이를 지닌 색들이 서로 침투하는 것처럼 칠해져 있어서 어디까지 ‘손’인지, 어디까지가 배경이나 ‘바이올린’인지 선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물질성은 줄어들고 손의 움직임만 남은 것이 비물질화가 되겠다.

문단4 : 브라갈리아의 ‘첼리스트’

1) 일부 미래파 작가들은 회화에 이어 사진에도 순간을 넘어선 시간의 지속을 자신의 의도대로 담기 위해 불규칙한 다중 노출을 사용하는 ‘포토 다이내믹즘’을 창시했다.

[주목] 포토 다이내믹즘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다. 반면, 발라의 작품은 그림이었다.

⇒ 미래파 작가들 중 일부는 회화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한 미학을 드러냈다. 크로노포토그래피처럼 ‘다중 노출’을 썼으나 ‘불규칙함’이 다른 점이 되겠다.

2) 다이내믹즘이란 모든 현상을 힘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발상으로,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속도의 자취가 남아 역동적인 감정과 긴박감 등이 한 화면에 지속되도록 하는 경향을 말한다.

⇒ 다이내믹즘은 우리말로 하면 역동주의쯤이 되겠다. 모든 현상을 ‘힘’으로 설명한다는 게 참 특이하다. 그렇다면 ‘힘’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남은 속도’를 보여 주고, 그로 인해 ‘역동적 감정’과 ‘긴박함’을 드러낸단다. 어렵지 않다.

3) 이를 위해 브라갈리아는 그의 사진 ‘첼리스트’에서 순간적인 노출과 긴 노출들을 불규칙한 리듬으로 병행했다. 이 작품에는 좌우와 위아래로 움직이는 첼로 연주자의 양손 움직임이 담겨 있다.

⇒ ‘순간적인 노출과 긴 노출을 병행’한 것이 바로 1)에서 말한 ‘불규칙한 다중 노출’의 방법이겠다.

4)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 첼리스트]가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노출되면 움직인 부분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질성이 사라지며, ...

⇒ 그렇겠다. 다중 노출을 하면 첼리스트가 현을 연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정작 첼리스트의 손이 드러내는 물질성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겠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불규칙적으로 노출한 것은, 포토 다이내믹즘의 경향대로 ‘순간을 넘어선 시간의 지속’을 작가의 의도대로 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5) 어두운 배경으로 인해 힘의 방향으로 움직임의 자취가 뚜렷하게 흰 선으로 남는다.

⇒ 왜 배경을 어둡게 했을까? 흰 선을 뚜렷하게 강조하기 위해서였나 보다. 이로 인해 흰 선의 자취는 뚜렷하게 남지만, 손의 형태는 허물어져 비물질적인 특성을 드러내겠다.

6) 배경에 침투하며 소멸하는 손의 형태[→ 비물질성]는 응시자의 망막에서 점차 희미해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잔상이 비물질화의 특성으로 움직임을 환기한다. 영상을 보듯 움직임의 상상을 자극하는 이 작품은 운동감을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다.

⇒ 문단1-1)에서 말했듯이 전통적 회화가 ‘정적인 비례나 조화’를 통해 대상을 재현했다면, ‘포토 다이내믹즘’은 ‘운동감’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문단5 : 미래파의 의의

1) 브라갈리아도 발라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의 기계적 재구성에 몰두하지 않고 오로지 감각적인 움직임의 부분들에 몰두했다.

⇒ ‘움직임의 기계적 재구성’은 크로노포토그래피가 다중 노출을 통해 보여 준 무미건조한 규칙적인 리듬이겠다. 이는 생명의 악동과 거리가 멀었다. 브라갈리아나 발라 등의 미래파 화가들이 회화든 사진이든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감각적인 움직임’이다.

2) 이는 미래파 회화가 그러하듯, 엄격한 분석적 분해로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는 크로노포토그래피와 대비되는 점이다. 그의 사진 작품은 당시 다른 미래파 화가들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 같은 사진이었지만 크로노포토그래피와 달리 브라갈리아의 사진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났다.

3) 미래파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지만 불안감이나 긴박감 등도 예술적 감흥을 불러오는 새로운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오늘날까지 예술적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했다.

⇒ 비례, 균형에서 오는 조화로움, 아름다움이 주는 예술적 감흥과 달리, 불안감이나 긴박감 등도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예술적 감흥을 준다는 데 미래파의 의의가 있겠다.

4) 아울러 사진이 오롯이 예술을 위한 매체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브라갈리아가 불규칙적인 다중 노출로 찍은 ‘첼리스트’를 통해 미래파의 사진 기법은 사진이 예술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했다. 이렇게 미래파는 예술적 지평을 넓혔고, 그들의 이름대로 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41~45] 회곡 : (나) 유치진, 「소」

* 수록 지문 평가

1930년대의 농촌 현실을 담은 사실주의 연극이다. 순박한 농촌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비극의 사회적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자.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말뚝이가 앓아 눕게 된 이유

처: (옆에 있는 개똥이를 보고) 옳지 개똥아, 네가 어디 시원스럽게 아는 대로 대 봐라[→ 말해 봐라]! 성(= 형)이 장가가고 싶다는 데가 어디야? 넌 알지?

개똥이: 몰라요! 그런 걸 누가 알어![→ 형한테 혼날까 봐 알면서도 잡아떼는 개똥이]

국진[→ 국서의 동생. 말뚝이와 개똥이의 삼촌]: (일하다가 인제 나오며) 아주머니[→ 형수인 국서의 아내를 부르는 말], 어찌된 심판입니까? 왜 이래요?

처: 말뚝이 좀 봐요. 이놈이 아침부터 꿈무늬를 빼고 생명을 피더니,[→ 이 작품의 배경은 한창 바쁜 추수철의 농촌이다. 그런 시기에 말뚝이가 일을 쟁개치고 앓아누운 것을 답답해하는 말이다.] 원 세상에, 이게 장가가고 싶어서 그랬다는군요.

국진: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뽕 난다더니[→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교만하게 굴거나 더욱 옳나감. 농사철에 일을 하지 않는 조카를 비난하는 말이다.] 참 그 짝이로군요.

국서: 그래두 그저 장가만 가구 싶다구 이런 지랄병은 나지 않는 법야. 제 맘대로 안 되는 계집애가 있다가나 생각에 든 계집애가 남의 손에 갔다가나 하지 않은 답에야.[→ 아들 말뚝이의 행동에 더 깊은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젊은 일꾼: (일하다가 들어와 보고) 아니, 댁에서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 그저께 말뚝이가 콩밭에 가는 귀찬이 짐을 받아 지고 가는 것을 나는 봤는데요.[→ 말뚝이가 귀찬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젊은 일꾼은 알고 있다.] (말뚝이 또 운다.)[→ 귀찬이 이름이 나오자 서러움이 더해진 말뚝이]

국서: 콩밭에? 귀찬이? 아니, 건넌집 귀찬이란 년 말이지?

젊은 일꾼: 암요.

개똥이: 어제저녁에도 저 아래 대감나무 밑에서 개하고 살짝이 만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바로 어제저녁이야.[→ 부모님이 상황을 알게 되자, 개똥이도 어쩔 수 없이 형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처: 그러면 그렇다구 왜 진작 대 주지 않구! 그저 두 놈이 똑같애!

개똥이: 그런 소리 대 주다가 성한테 혼나게. 모르는 소리 말어. 성이 어떻게 힘이 세다구 그래.[→ 개똥이가 처음에 부모님에게 형의 연애를 모른 척한 이유가 여기 있다.]

국서: (말뚝이의 불을 켜지르며) 에그, 이 자식! 제 주제에! 밀구멍으로 호박씨 까구나! 이것두 사내 꼬부랑이라구 그래두 떡국 농간은 있어서[→ 원래 떡국이 농간한다는 말은 나이 먹은 만큼 세상살이를 잘 풀어나간다는 뜻이다.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씩 먹는다는 풍습과 관련된 말로서, 말뚝이가 장가갈 만큼 나이가 든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계집애 뒤꿈무늬에 따라다닐 줄은 안단 말이지? 에잇, 사람 못 된 자식!

처: 그런데 귀찬이 아버지가 아까 와서 그러는데요, 읍내 나까무라 상헌에 말해서 그 애를 이번에 일본으로 팔아먹는대요.[→ 귀찬이네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딸을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국서: 일본으로?

젊은 일꾼: 흥, 땡잡었구나, 그 집에선.[→ 워낙 살기 어려운 당시 조선 민중들의 형편을 반영하는 말인 동시에, 딸을 팔아먹는 집안에 대한 비난으로도 볼 수 있는 대사이다.]

젊은 일꾼: 간밤에 대감나무 밑에서 말뚝이가 만났다니까 그럼 그 말을 그때 귀찬이한테서 들은 게로구먼. 그래서 그런 게지? 응, 말뚝아? [→ 이제야 말뚝이가 일을 쟁개치고 앓아누운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말뚝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막 사십 원 몸값으로 팔려 간대요. 대감나무 밑에서 그랬어.

[중략 부분 줄거리] 국서는 귀찬이의 몸값을 갚아 주겠다고 아들 말뚝이에게 약속을 하고 자기네 소를 팔려 하지만, 소가 이미 팔렸다는 말을 듣는다. 이에 말뚝이는 개똥이를 의심하여 마구 때는데, 정작 소는 마름이 밧 대신 끌고 가 버린다.

⇒ 국서네는 지주에게 밧이 있었는데, 그 밧을 갚지 못하면 소라도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던 마름이 실제로 소를 끌고 가 버린 것이다.

토막2 : 마름이 소를 끌고 간 이후의 상황

젊은 일꾼: 개똥이의 얻어맞은 데가 아직 안 나았수?

처: 그 애가 싸운 지가 오늘이 꼭 보름째데 아직 안 낫구료. 소 한 마리 빼앗기는 통에 집안일이 죄 엉망진창이 되는데, 참 우습죠. 작은애 [→ 개똥이]는 저렇게 대가리를 깨구 속을 앓지요, 큰놈[→ 말뚝이]은 큰놈대로 다 된 혼인이 틀려먹으니까 괜히 또 그놈의 생피병을 피고 돌아다니죠.

젊은 일꾼: 또 그놈[→ 말뚝이]이 그렇게 일을 안 해?

처: 일이 다 뭐유? 귀찬이가 나까무라 상헌에 끌려 일본으로 간 뒤는 밥도 잘 안 먹어요. (소리를 낮추어서) 여기서만 말입니다만 그저께는 요 마름 집에다가 그놈이 불을 지를려구 덤뻬어요. 세상에 원 그런 미련통이가 어딴겠우?[→ 앞으로 뭔가 큰 사건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말뚝이는 이후 지주의 공간에 불을 지르고 만다.]

젊은 일꾼·젊은 일꾼: 저런!

처: (말뚝이의 흉내를 내며) 마름 녀석이 막 우리 집 소를 빼앗아 갔다! 그래서 내 색시 귀찬이는 그애 팔려 가구 말었다! 막 이놈의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야지! 그래야만 분이 풀려.[→ ‘처’가 말뚝이의 말과 행동을 흉내 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치를 떨고 막 덤뻬겠죠. 혼났어요. 우리는 개 아저씨 [→ 국진]가 그때에 없었더라면 참 큰일 났을 겁니다.

젊은 일꾼: 허헉헉....., 그런 일은 미련스런 말뚝이가 아니면 생각두 못 먹을 일이야.

처: 그놈이 바로 역적이야요. 허는 짓짓이 그저 미련스런 짓뿐이거든요. 허지만 인제는 나두 허두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옵네다.

⇒ 개똥이는 형 말뚝이에게 얻어맞은 후 보름이 되도록 누워 있고, 말뚝이는 마름 집에 불을 지르려다 삼촌인 국진이 말려서 포기한 상태이다. 국서의 ‘처’는 두 아들의 행동과 돌아가는 상황이 기가 막혀, 자식들을 말리지도 못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작품 전체 줄거리

제1막 : 국서는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가난한 소작농이다. 그에게는 혈통 좋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국서는 유일한 재산인 이 소를 아들들보다 더 애지중지한다. 풍년이 들어 가난한 국서네도 잠시 기쁨에 들뜨는데, 그 틈을 탄 지주는 마름을 보내 그동안 밀린 장리 밧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 개똥이는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만주로 갈 궁리를 하면서 소를 팔아 노자를 마련해 달라고 부모를 조른다. 한편 맏아들 말뚝이는 마을 처녀인 귀찬이와 결혼하고 싶어하지만, 귀찬이가 집안의 밧 때문에 일본으로 팔려 가게 되자 한창 바쁜 농사일을 던져둔 채 앓아 드러눕고 만다.

제2막 : 국서는 결국 말뚝이와 귀찬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려 귀찬이네 빚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한다. 이에 기운을 차린 말뚝이는 농사일에 신명을 내지만, 그러는 사이 개똥이는 소장수를 불러들여 소를 몰래 팔 궁리를 한다. 그때 다시 찾아온 마름이 국서에게 빚 갚기를 독촉하고, 말뚝이가 대들어 마름의 기분을 상하게 하자 국서 내외는 뒷일을 걱정한다. 생각한 바와 달리 국서는 돈을 빌리는 데 실패해 귀찬이네 빚을 갚아줄 수 없게 되고, 결국 소를 팔기로 한다. 그러나 소를 사러 온 소장수가 국서네 소는 이미 팔리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해, 국서와 말뚝이는 개똥이를 의심하게 되고, 이에 집안에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다. 개똥이가 소를 팔려고 흥정을 하기는 했으나 미처 팔지는 못한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된 순간, 다시 마름이 나타나 밀린 빚 대신에 소를 끌고 가 버린다.

제3막 : 귀찬이는 결국 일본으로 팔려 가고, 국서는 소를 찾기 위해 마름과 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나, 소송을 해 봤자 소작인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극도로 절망한다. 그 와중에 귀찬이 일로 절망한 말뚝이는 지주의 공간에 불을 지르고 주재소에 붙잡혀 간다. 개똥이는 불기운으로 붉어진 하늘을 보며 하루 속히 마을을 떠나야 살 수 있으리라고 중얼거린다.

